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2019.4.11,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VIP,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 일환으로 '안전대책협의회(가칭) 구성·운영 의무화' 추진

○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사전 안전대책 미비**로,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빈발

【 언론 보도 】

- "통학로 350m '공사판' … 아슬아슬 학교가는 길 ('17.9.5. 중부일보)"
- "차 덮치고 철근 추락 … 겁나는 통학로 ('17.10.17. JTBC)"
- "공사장 옆 학교… 통학길도 위험 ('17.10.17. 연합뉴스)"

○ 현재는 **교육환경법*** **등에 따른 특정 규모의 공사**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 21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

⇒ **이해당사자**인 학교장, 사업자 등이 **학교 현장에 맞는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해, **기본 지침을 제시**할 필요

2. 추진 경과

○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관계 부처(행안부) 협의('18.3월, 7월)

○ 교육부-행안부 공동 지침 정책연구 추진('18.3월~8월)

○ 공동 지침(안) 시·도교육청 및 행안부(지자체) 의견 수렴('18.11월)

○ 교육부-행안부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공동지침 마련 협의회('19.1월)

○ 가이드라인(안) 시·도교육청 및 행안부(지자체) 의견 수렴('19.2월~3월)

○ 교육부-행안부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공동지침 마련 협의회('19.4월)

Ⅱ. 안전대책협의회 개요 및 운영 절차

1. 필요성

<관련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2]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1.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소 2.0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보행안전통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재 **법률로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생 등 보행자 위험노출 상존**

○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안전조치 안착으로 **학생 통학로 안전 보장**을 통하여 불안 해소 및 **사전 위험 예방을 위해 협의회 필요**

2. 개요

○ **(목적)** 학교 주변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진행 중,**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

○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운영) 사업자 등**에 학교 주변 공사 인·허가 신청시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원) 학교장, 사업자, 지자체** 인·허가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역 담당 **경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합의된 자

▸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원 예시**
- **(대 상)** ○○초 직선거리 150m 위치에서 6층 건축물 신축공사 진행
- **(구성원)** 학교장, 공사 책임자 등 사업자, 교육청 업무 담당자, 지자체 건축 허가 담당자, 파출소 또는 경찰서 내 ○○초 주변 지역 담당 경찰

○ **(임기) 임기를 특정하지 않으며,** 공무원인 경우 당연직으로 위촉

3. 운영 절차

① 사업자	◦ (Ⅲ. 2. 협의대상 공사의 경우) 공사 인허가 신고 및 신청시 - 「**00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계획서")」 제출 * 공사내용에 따른 통학로 **안전 확보 방법만 기재하였다면 형식 무관** ※ **Ⅲ. 2. 협의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계획서 제출받지 않을 경우** (② 인·허가 담당기관 단계에서) **담당기관이 통학로 해당 및 안전확보 여부 검토 후 학교 및 기관 간 공유**
⇓	
②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 교육지원청)	◦ **"안전 계획서"를 해당 학교 통보 및 기관 간 공유*** - **(지자체/행정시)**→학교,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학교, 지자체
⇓	
③ 학교장	◦ **(수용)** 종결 ◦ **(미수용) 교육지원청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요청**
⇓	
④ 교육지원청	◦ 「**00학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	
⑤ 안전대책협의회	◦ 「**통학로 안전 대책 및 위험요소 제거안**」 마련
⇓	
⑥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 교육지원청)	◦ **(이행 확인)** 공사 **인·허가** 통보 ◦ **(미이행)** 이행시까지 공사 인·허가 **보류**
⇓	
⑦ 안전대책협의회	◦ 이행여부 관리 ◦ 안전대책협의회 종료 후 운영 결과 제출
⇓	
⑧ 시·도교육청	◦ 운영 결과 관리

Ⅲ.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1.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대책협의회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시·군·구)·행정시*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주관은 지역 여건에 맞게 단독, 공동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80조 관련

※ 교육지원청 주관 권장(사유 : 학생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공사 감독 및 인·허가 담당부서가 분산)

▸**"00학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의 예**

· **(공동운영의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담당과장급 이상의 공동위원장으로 협의회 운영

· **(단독운영의 경우)** 한 기관의 단독 또는 양 기관이 교대로 협의회 운영

※ (예시) 교육지원청 주관 운영시

소속	직책	비고
교육지원청	담당국(과)장	당연직 위원(위원장)
지자체(시·군·구)	인·허가 담당과장	당연직 위원
학교	학교장	당연직 위원
사업자	공사 책임자	당연직 위원
경찰서	학교 관할 경찰	당연직 위원
민간전문가	필요시 교육지원청 추천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필요시 지자체 추천	위촉직 위원
기타	필요시 위원 과반수 추천	위촉직 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간사

※ 고등학교가 대상일 경우 필요시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위원으로 참여

② 안전대책협의회는 **과장급 이상의 협의체**로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공무원, 당해 사업자, 경찰, 민간전문가 등 참여(7명 내외)

※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시·군·구)에 요청하여 양 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① 협의회 주관 기관, ② 운영방식 등을 지역여건에 맞게 구성

③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대표나 공동대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논의를 통해 호선으로 결정 가능

④ 안전대책협의회는 **"통학로 안전 대책 및 위험요소 제거안"을 사업자가 이행시 자동 해제**(단, 공사 중 안전대책 미흡 발견 시 재운영)

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협의회 참석 관련 소정의 수당 지급 가능

2. 협의 대상 및 내용

○ 협의 대상

- (필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권장) 그 외, 통학로의 폐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협의 내용

- (안전대책 수립) 등하굣길 안전 위협 요소 및 예방책 등 협의회 구성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후, 사업자 등과 협의
- (이행계획 및 관리) 협의된 안전대책의 이행 계획 및 관리 방안 마련

▸ **협의 내용 예시** : 학교 정문 앞 건널목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 **건의사항(예)**

– 지자체 건의사항 : 보행로와 공사장 경계에 보행자 보호용 펜스 설치 → **수용**

– 학교장 건의사항 : 등교시간(8시-9시) 공사차량 이동 제한 → **수용**

· **안전대책 이행 관리 방안(예)**

– 보행자 보호용 펜스 설치기한 확정 및 매주 월요일 학부모 모니터링단 실사

– 등교시간 공사차량 이동 제한 3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3. 참여기관(구성원) 역할

대상	역할	비고
사업자	· (신청시) “00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 제출 · (안전대책협의회 후) 안전대책 이행	
지자체 담당자	· 안전 계획서 학교 및 교육청 통보 · 안전대책 이행여부 관리	학교·기관 통보 및 이행여부관리는 인허가 접수 기관 소관
교육지원청 담당자	· 안전 계획서 학교 및 지자체 통보 · 안전대책 이행여부 관리 · 운영·점검 결과 제출(반기별)	
학교장	· 필요시 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요구	
경찰	· 해당 지역 순찰 등 안전대책 관리	

Ⅳ. 행정 사항

1.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협조사항

○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주관(최초) : **~ '19.5월까지**

○ 학교 주변 소관 공사 인·허가 등 접수시 "00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 제출 요구 및 해당 학교 등 통보

○ 소관 인·허가 공사 안전 계획서 이행여부 관리

○ **(시·도교육청)** 안전대책협의회 운영·점검 결과(점검표) 관리

2.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행정시 협조사항

○ 학교 주변 소관 공사 인·허가 등 접수시 "00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 제출 요구 및 해당 학교 등 통보

○ 소관 인·허가 공사 안전 계획서 이행여부 관리

3. 협의회 운영·점검

○ **(방법)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점검 결과 관리**

○ **(내용)** 공사 개요, 협의회 구성 여부, 사전 협의회 운영 내역, 협의회 운영 결과(안전대책 이행여부 등)

Ⅴ. 향후 일정

○ 교육청 및 지자체 안내 및 운영 결과 분석('19.4월~)

○ 교육(지원)청, 안전대책협의회 구성(~'19.5월)

○ 교육시설기본법 제정 시 법제화 여부 검토('20년~)

붙임1 *[예시]*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점검표**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점검표

교육청	00교육지원청	담당자	○○○과	장학사	○○○(000-000-0000)
점검 기간	2019. 4. ~ 2019. 12.		○○○과	사무관	○○○(000-000-0000)
			○○○과	주무관	○○○(000-000-0000)

순	시도	교육지원청	학교명	협의회명	협의회 운영기간	협의 내용		협의(이행) 결과	이행 여부
						일자	내용	내용	
1	○○	동부	○○초	○○○학교 안전대책협의회	19.0.00.~ 19.0.00.	19.0.00.	①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시공사) ②2개월 주기 이행여부 점검 (지자체, 경찰) ③2개월 단위 정기협의회 진행	①통학로 안전펜스 설치(시공사, '19.0.0) ② ③	○
						19.0.00.	①공사장 근처, 공사차량 교통사고 발생(19.0.00.) ②통학시간(8~9시) 공사차량 운행정지(시공사)	① ②	
						19.0.00.	①통학로 안전펜스 재설치 요청	①	
2	○○	서부	○○중	○○○학교 안전대책협의회	19.0.00.~ 계속	00.0.00.	①통학시간(8~9시) 학생 이동 수신호 운영(학교) ②통학시간(8~9시) 공사차량 운행정지(시공사) ③상시 이행여부 점검(경찰, 지자체) ④3개월 단위 정기협의회 진행	① ② ③	
						00.0.00.	①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정지 재요청	①	
3	○○	남부	○○고	○○○학교 안전대책협의회	19.0.00.~ 계속	00.0.00	① ② ③	① ② ③	
4	○○	북부	○○유	○○○학교 안전대책협의회	19.0.00.~ 계속	00.0.00	① ② ③	① ② ③	

붙임2 부산 장전초교 통학로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사례

□ 공사 개요

○ **(공 사 명)**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

○ **(공사목적)** 산성터널 도로 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부산시 역점사업

○ **(근 거 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내지 제17조

○ **(공사기간)** '14. 3. 18. ~ '18. 9. 17. (공사 지연으로 12월 완료 예정)

○ **(사업예산)** 3,004억(국비 164억, 시비 425억, 민간투자 2,415억)

○ **(사업주체)**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 (장전초~산성터널 방향) 민자사업자(시공사 : P건설)
- (장전초~온천천 방향) 부산시 도로건설사업본부(시공사 : D건설)

○ **(공사구간 교통사고)** 1건

※ 무단 횡단하던 할머니가 공사차량(25t 트럭)에 치여 사망('16.5.30. 09:40경)

□ 통학로 안전관리 현황

◈ 학교, 교육청의 노력으로 공사 초기보다 통학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시공사-지자체 간 협의가 적극 실시되어 모범 사례로 공유 필요

○ **(안전시설 관리) 안전시설·인력** 확충 및 **안전대책협의회** 실시

- **(보행자 통행로 확보)** 공사현장과 통행로 사이 안전난간 설치
- **(교통지도 인력 배치)** 등·하교시간 통학로 주요 지점에 안전요원 배치

※ **학교 앞**(학기중 8~9시) : 노인 4명 / P **구간**(학기중 8~9시 및 12~17시, 공휴일·방학 9~12시) : 시공사 안전요원 2명 / D **구간**(학기중 12:40~16:40, 공휴일·방학 8:40~12:40) : 부산시 안전요원 1명

○ **(안전대책협의회 정례화)** 학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대책 협의 실시**(학기당 1회(6, 12월) 실시, 사안 발생 시 상시 개최)

※ 안전난간·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현장점검,** 등·하교시간 중장비 통행 제한 및 공사시간 조정 등 **안전대책 관련 조치 시행**

○ **(학생안전교육 실시)** 학급·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동영상 시청, 훈화, 외부강사 초청 등 안전교육 실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 부산 장전초교 주변 교통안전관리 현황

<table>
<tr><td>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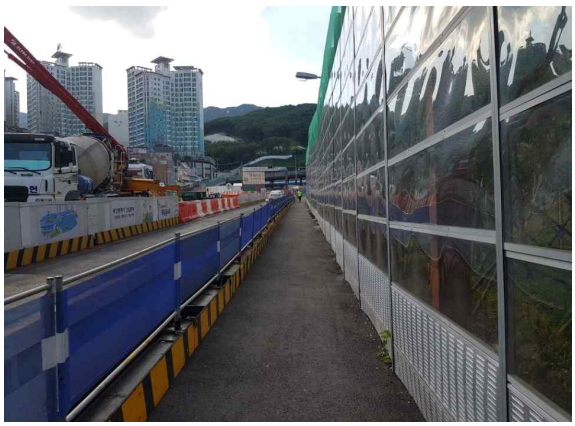 </td></tr>
<tr><td>보행자 통행로 - 차도 - 공사현장 간 분리(좌측)</td><td>보행자 통행로 - 차도 - 공사현장 간 분리(우측)</td></tr>
<tr><td> </td><td>
</td></tr>
<tr><td>안전 신호수 배치</td><td>보행자 안전통로 배치</td></tr>
</table>